

國際通商學碩士 學位論文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와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in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Enterprises

指導教授 崔 成 日

2007年 12月

韓國海洋大學教 大學院

通 商 行 政 學 科

林 奈 泳

#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연구범위	4
제2장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5
제1절 중국의 지적재산권 개념	5
1. 중국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종류	5
가. 중국 지적재산권의 정의	5
나. 중국 지적재산권의 종류	7
(1) 특허권	7
(2) 상표권	9
(3) 저작권	11
2.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률체계	13
제2절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17
1.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	17
2. 중국 지적재산권의 보호 유형	21
가. 행정적 보호	21
나. 사법적 보호	23
3.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25
가.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25
나.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 시스템 구축	27
제3장 중국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침해현황	30
제1절 중국의 지적재산권의 등록 현황	30
1. 특허권 등록 현황	30
2. 상표권 등록 현황	32

3. 저작권 등록 현황 .....	34
<b>제2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현황 .....</b>	<b>36</b>
1. 특허권 침해 현황 .....	37
2. 상표권 침해 현황 .....	37
3. 저작권 침해 현황 .....	39
4. 한국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 .....	40
<b>제4장 중국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b>	<b>43</b>
<b>제1절 중국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b>	<b>43</b>
1. 특허권 분쟁 사례 .....	43
가. 한국 GM대우 vs. 중국吉利자동차 .....	43
나. 중국 河北節能 vs. 蘇州 삼성전자 .....	44
2. 상표권 분쟁 사례 .....	45
가. 중국 藍光 vs. 한국 LG산전 & LG전자 .....	45
나. 한국의 Wemade & Actoz vs. 중국 盛大 .....	47
3. 저작권 분쟁 사례 .....	48
가. 한국 NEXON vs. 중국 騰訊公司 .....	48
나. 한국 올림피아 vs. 북경 올림피아 .....	48
<b>제2절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b>	<b>49</b>
1. 분쟁사례에서 제기된 문제점 .....	49
2. 대응 방안 .....	51
<b>제5장 결    론 .....</b>	<b>54</b>
<b>참 고 문 헌 .....</b>	<b>57</b>
<b>ABSTRACT .....</b>	<b>60</b>

## 표 목차

<표 1> 중국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법률 .....	14
<표 2>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 .....	16
<표 3>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요강의 6대 중점사항 .....	20
<표 4> 지적재산권 보호과정에 관한 주요 내용 .....	26
<표 5>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의 구조 .....	27
<표 6> 중국내의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1985. 4~2007. 4) .....	31
<표 7> 중국 2002년~2005년 상표 신청 및 출원동향 .....	32
<표 8> 중국의 저작권 등록현황 (2000년~2005년) .....	35
<표 9> 특허권 침해 신고 현황 .....	37
<표 10> 중국의 상표권 침해 현황 .....	38
<표 11> 저작권 침해 신고 현황 .....	39
<표 12> 기업규모별 침해가 발생한 연도 .....	40
<표 13> 업종별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 .....	42
<표 14> QQ와 스파크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	44

## 그림 목차

<그림 1> 중국 藍光과 LG산전, LG전자 등록상표 .....	46
-------------------------------------	----

# ABSTRACT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in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Enterprises

Lim, Na You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s becoming severe. So,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core technologies that determin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industr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assets such as trade mark or copy right have become the focus of interest.

With this background,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at, the author firstly analyzes the status quo of the IPR protection system in China. Then in the chapter 2, the types of IPR and IPR protection system in China are introduced to find out the efforts of Chinese government to reach the global standard by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IPR. In the chapter 3, the statistics of registration and infringement of IPR are present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n Chinese IPR protection status. Finally, the chapter 4 tries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Korean enterprises by analyzing the IPR dispute cas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present WTO system, although Chinese government tries to strengthen the IPR protection system, the infringement cas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Korean enterprises need to prepare the proper protection measurements before they enter the Chinese market. As far as Chinese government is putting on more efforts to protect IPR, Korean enterprises are also required to adopt more aggressive counter measurements to protect their IPR.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2006년 상반기 10.9%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간 10%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10년째 세계 최대의 자본유입 시장으로서 해마다 외국인 투자액이 연 40%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500대 기업 중 450개 이상이 진출해 있는 세계적 브랜드의 각축장이 되었다.<sup>1)</sup>

이처럼 세계가 중국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성장하는 시장’ 이기 때문이다.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 유치와 2010년의 상해 박람회 유치는 중국 시장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 분명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 시장은 이미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으며, 소비패턴도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향후 중국 시장이 중저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고급화 ·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공략해야 할 대상임을 암시한다.

또한 WTO 가입을 계기로 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과거보다 향상되고 있다. WTO 가입은 중국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국제적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는 수교 14년에 불과한 역사를 고려해 볼 때,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양국의 교역 규모는 이미 500

---

1) KIEP, “2006 상반기 중국경제 형세 및 하반기 경제발전 전망”, 북경사무소 한·중 경제포럼, 2006.12.3.

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변모하였다. 2010년이 되면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sup>2)</sup>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될 것은 확실하며 중국시장은 이제 더 이상 선택적 시장이 아닌 필수적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동안의 중국 진출과정이 그렇게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이제 그 동안의 교류 경험을 총괄하여 중국 진출의 득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다시 한 번 가다듬을 때가 왔다.

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 경제의 국제화와 더불어 최근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인 기술에 대한 개발과 보호, 그리고 상표,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보호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실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인식되지 못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 초 국민경제발전 전략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01년 12월 WTO 가입을 앞두고 이 두개의 법을 다시 개정하는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관련 국제조직 활동에 적극 참가해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sup>3)</sup> 2006년 4월 26일 발표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요강>과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성과 전람회>개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제도정비와 더불어 2004년까지 상표에 대한 누적 등록 건수는 210만 건이 넘어 세계 제1위의 상표등록 국가가 되었으며, 특허에 대한 누적 등록건수는 130만 건 정도로, 양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지적재산권 강국이라 할 수 있다. 흥미 있는 사실은 1985년부터 2007년 4월말

---

2) 강준영, 《중국 진출전략 대특강》, (서울: 중앙M&B, 2003), p.48.

3) 이종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21.



까지 중국에 출원된 특허건수는 약 286백만 건 정도이다. 총 출원 건수 중 100백만 건을 돌파한 시점은 2000년으로 15년이 소요되었지만, 다시 100백만 건을 돌파한 시점은 2004년으로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짧은 기간 내에 중국의 출원건수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중국의 경제력이 그만큼 성장하였고, 장차 중국이 지적재산권의 무대로 떠오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장래의 분쟁에 대비하거나 또는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사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 진다.

비록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과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 속에 편입되면서 지적재산권 출원건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등 지적재산권분야에서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이 부족하며 상표, 특허권,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및 음반, 영화의 불법 무단 복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 여러 선진국들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모조품의 생산 기지가 되어 중국 시장 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심지어는 미국, 유럽 시장에까지 모조품을 수출하여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기업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업상의 위협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지적재산권 침해건수 197건 중 중국에서의 침해건수가 75건으로 3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해결건수는 2003년 1건, 2004년 1건, 2005년 1건으로 극히 미미하고 나머지는 증거 수집중이거나 현지 단속 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망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이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sup>4)</sup>

---

4) 유진석 외2, “한중 지적재산권 분쟁의 현안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7-10호, 2007.7.23, p.1.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상품의 이미지 하락과 국제 경쟁력의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연구범위

본 논문에서는 문헌적 연구방법과 사례분석 연구를 채택하고 있다. 주요 문헌으로는 국·내외 관련 서적들과 학술지, 연구논문과 같은 문헌자료와 인터넷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현실성이 강한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사례연구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모두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 방법과 구성에 대하여 고찰한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등록현황과 침해현황을 살펴 보았다. 특히, 제4장을 통해 중국과 한국 간에 일어난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처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장에 대한 요약과 함께 중국 지적재산권에 관한 결론을 정리하였다.

## 제2장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 제1절 중국의 지적재산권 개념

#### 1. 중국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종류

##### 가. 중국 지적재산권의 정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산업과 관련된 지식기반 권리들을 말한다.

중국은 이 지적재산권을 ‘지식산권(知識產權)’으로 칭하며, “사람의 지적 창조물과 공상업적 표지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저작권(인접권 포함)·특허권(공업품 의장보호 포함)·상표권·발명권·상업 비밀권·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권·식물신품종권·상호권(공장명칭)·원산지명칭권(지리표지)·특수표지권·상품특유명칭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5)</sup>

지적재산권을 지식산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에서 ‘특허’는 ‘專利’로 표기하며, ‘발명특허’는 ‘發明專利’, ‘실용실안’은 ‘實用新型專利’로, ‘의장특허’는 ‘外觀設計專利’로 표기하고 있어 우리의 용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식산권’이란 민사권리에 속하며, 창조적인 지력의 성과와 공·상업 표기에 대해 법이 부여한 모든 권리의 통칭이다. 1986년 제정된 <중국 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이하 ‘민법통칙’)에서 최초로 ‘지식산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그 이전까지는 ‘지력성과권(智力成果權)’이라는 용어를

5) 강효백, 《중국법 통론》, (서울: 경희대출판국, 2005), p.329.

사용하였다.<sup>6)</sup>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특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sup>7)</sup>

첫째, 지적재산권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독점성·배타성을 가진다. 둘째, 한 국가에서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그 국가의 국경 내에서만 효력을 지니며 다른 국가의 보호를 받으려면 국제조약 및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취득 절차를 거치거나 타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역성을 가진다. 셋째, 지적재산권은 그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법적효력을 유지해야하는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1982년 “헌법” 제20조·제22조와 일반법으로는 “민법통칙”이 있으며, 프랑스와는 달리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통합법전으로 제정하지 않고 분야별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상표권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각각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는 달리 발명·실용신안·의장은 “특허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입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sup>8)</sup>

이외에,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 및 그 주무기관에서 제정한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법규, 부문규장, 최고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의사법해석(司法解釋)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부당경쟁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 “식물의 신품종보호조례”,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민사분쟁사건 심리시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 등이 그것이다. 또한, 중국은 국내법 이외에 국제협력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WTO의

6) 차경자·최성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2007.9.30, p.201.

7) 황경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23.

8) 강호백, 전게서, p.331.

“TRIPs협정”을 포함한 15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 나. 중국 지적재산권의 종류

### (1) 특허권

특허권은 법률이 부여한 특정한 사람이 어떤 항목의 기술에 대하여 향유하는 전용 또는 독점의 권리이다. 특허법은 특허기술의 귀속, 양도, 사용, 허가와 보호로 인하여 형성된 사회관계를 조절하는 각종 법규범이다. 특허 기술은 특허법이 보호하는 주요한 내용이며, 공개성, 독점성과 시간성의 기본특징을 가진다.<sup>9)</sup>

중국 특허권을 정의할 수 있는 특허법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을 보인다.<sup>10)</sup>

첫째, 단일 특허보호 제도의 시행이다. 국제관례 적응과 중국 특허제도와 파리공약의 조화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은 단일 특허보호 제도를 채용하여 발명창조를 단일 특허법의 보호 안에 규정하여 특허권의 권한이 명확하게 귀속되도록 하고<sup>11)</sup>, 또한 한계를 정하기 용이하게 하였다.

둘째, 하나의 법률이 3건의 특허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중국의 특허법은 발명특허·실용신안특허 및 의장특허를 하나의 법률 안에 집중시키고, 각 장의 특허신청과 심사허가절차·특허보호기한·특허보호범위 및 그 관리를 명확히 규정하였다.<sup>12)</sup> 이러한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당시 중국에서 경제가 아직 발달하지 못한 조건에서 발명 창조를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전체적 국가 과학기술의 부단한 진보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추진방법은 중국의 실제적 국가상황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었다.

9) 김태한, “중국 지적재산권법의 서론적 고찰”, 『법학논총』 23권 1호, 1997, p.422.

10) 조동제, 문준조,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체제에 관한 연구”, 현안분석 2004-20, 한국 법제연구원, 2004.11.30, p.35.

11) 강효백, 전계서, p.333.

12) 특허법 제2조.

셋째, 3가지 제도가 단일법에 병존한다. 중국의 특허법은 신청공개제·절차심사제와 등록제를 하나의 법률로 병존시키고 있다. 발명특허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8개월간 공개한 연후에 다시 실질적인 절차의 심사를 진행한다.<sup>13)</sup> 발명특허·실용신안과 의장특허 신청은 등기제를 채용한다.<sup>14)</sup> 이때는 다만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입법의 의도는 특허기술이 하루빨리 사회의 일반대중들에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취지이고, 일반민중이 하루빨리 특허신청의 정보를 획득하여 충분한 특허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밖에도 이러한 제도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과정 중에 실질심사 청구를 제기할 것인가 여부를 고려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특허국이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sup>15)</sup>

넷째, 허가와 강제허가를 병행한다. 실시조건을 갖춘 단위가 만들어 내는 중요한 직무상의 발명 창조에 대하여 그 상급 유관 주관부문은 국가체제에 근거하여 기타 단위가 실시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기타 특허권자가 만들어 내는 발명창조에 대하여 유관단위는 그 특허실시의 조건을 구비하고, 또한 그 특허실시의 조건을 청구하거나, 합리적인데도 특허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국가 특허국에 강제허가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규정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국가 특허국은 강제실시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sup>16)</sup>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공유권 행정의 이익을 추진하고, 특허권의 남용 방지와 사회공중의 이익을 돌보는데 있다.

다섯째, 특허관리기관과 인민법원의 특허분쟁 공동조정 제도이다. 중국의 특허법은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인이 특허관리기관이 행정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

13) 특허법 제34·35조.

14) 특허법 제39·40조.

15) 특허법 제35조 2항.

16) 특허법 제48·49조.

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7)</sup> 때문에 중국 특허법은 특허관리 기관의 직능을 특별히 한 권에 걸쳐 규정하고, 동시에 이를 계기로 특허관리기관을 설치하여 그 기관구성원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충분히 발휘하여 신속한 방식으로 분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특허침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은 위법을 조사한 후 기소하고 인민법원이 심하여 판결한다.

## (2) 상표권

상표, 즉 상품의 상표는 생산자 또는 경영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의 상품을 표시하고 타인의 상품과 서로 구별하는 특수한 표지이다.<sup>18)</sup>

상표권은 상표법을 통해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상표전용권 확보와 소비자 보호 이익의 결합이 가능하다. 상표전용권 보호는 상표법의 핵심이고 기초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자의 상표전용권에 대하여 확인을 주고 아울러 등록상표의 사용 및 관리상에 있어 법률적 보호의 기본규칙을 부여한다. 때문에 중국은 상표법에 “상표전용권을 보호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상표전용권 보호를 통하여 상품의 유통과 교환을 촉진하고 혼란을 방지한다. 더 나아가 기업이 확실히 상표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고, 상기의 상표의 신용과 명예를 유지·보호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이로부터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한다.<sup>19)</sup>

둘째, 자발적 등록과 강제등록의 허용취득이 가능하다. 상표사용자는 그 사용의 상표가 등록을 진행하는지 여부와 상표사용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모두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 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사용자는 상표전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때문에 만일 전용권 취득이 필요하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자발적 등록신청을 내

---

17) 특허법 제57조.

18) 김태한, 전제논문, p.425.

19) 상표법 제1조.

야하고, 아울러 상표국의 심사허가를 거쳐 등록한 자 만이 비로소 상표 전용권을 획득할 수 있고, 아울러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발적 등록은 결코 모든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적용하지 않는다. 일단 인체건강 및 공중이익에 관계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강제성 등록 제도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에 있어서 국가는 반드시 등록 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은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등록하여 심사허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0)</sup> 사람에게 사용하는 약품이나 연초제품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는 강제성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셋째, 통일등록과 분권관리가 동시에 실행된다. 상표의 등록신청은 국가 행정관리총국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상표에 대한 행정관리는 중국 특유의 분급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상표관리업무는 각각 중앙에서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로 진행하고, 그 주관기관은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이다.

넷째, 상표권 침해에 대해 행정 처분과 법원 소송이 병행 가능하다. 상표전용권 침해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침해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을 선택하여 처리 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권리 침해자에 대하여 즉시 그 침해행위를 정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벌금을 부과하고, 권리침해자가 피침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한다. 당사자가 만일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내린 벌금규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인민법원에 제소 할 수 있다.<sup>21)</sup> 도용상표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한 경우에 피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 이외에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sup>22)</sup>

---

20) 상표법 제6조.

21) 상표법 제53조.

22) 상표법 제59조.



### (3) 저작권

중국의 저작권이란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중국 저작권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저작권은 첫째, 저작권자의 인격권과 재산 권리의 보호할 수 있다. 이 법은 저작권자가 “발표권·서명권·수정권·작품완성권” 보호 등 저작권 중의 인격권을 향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사용권과 재산권, 즉 복제·발행·대여·전람·공연·영상·방송·정보네트워크·촬영저작·번안·번역·편집 등 기타 저작권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호받는다.<sup>23)</sup> 또한 출판·공연·녹음녹화·방송 등에 대하여 전문적 법률규정을 두어 방송작품과 방송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sup>24)</sup>

둘째, 권리주체의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저작권법 제9조는 저작권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저작권을 향유하는 사람이고, 저작권 주체가 된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자는 2종류가 있다. 하나는 작품을 창작하는 公民(자연인)이다. 유일하게 公民만이 作家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非作家, 즉 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公民·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다. 이들 중의 公民은 종종 상속 혹은 계약을 통하여 저작권을 획득한다. 그리고 그 중의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법률의 전문규정 혹은 계약의 약정을 통하여 저작권을 획득한다. 법률은 작가 혹은 기타 저작권자의 주체 자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향유하는 것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법률 활동을 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각종 작품에 대해 전면적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저작권법은 열거방식을 이용하여 보호해야 할 작품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

23) 저작권법 제10조.

24) 저작권법 제11조.

이에 문학작품, 구성작품, 음악·희극·극예·무용·잡기 등 예술작품, 미술·건축작품·촬영작품·영화작품 및 유사한 영화 촬영방법으로 창작된 작품, 공사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설명서등 도형 및 모형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작품 등을 포함한다.<sup>25)</sup> 동시에 민간문학 예술작품의 저작권의 보호규칙은 국무원이 별도로 이를 규정한다. 열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각종 각 분야의 창작종사자들이 각종 작품의 창작활동을 하는데 유리하고, 동시에 작품의 큰 종류에 대하여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형식의 작품에도 겸용함으로써 이를 일률적으로 보호한다.

넷째, 타인 작품의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제한 규정에 대하여 주로 작품의 합리적 사용방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저작권법 제22조는 12종의 상황에서의 합리적 작품사용을 열거하고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거치지 않고 보수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만 작가의 성명과 작품의 명칭을 밝혀야 하고, 아울러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학교의 시간수업 혹은 과학연구를 위하여 이미 발표한 작품을 번역 혹은 소량 복사하여 교재로 제공하거나 과학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 대중매체를 위하여 관련 있는 소식은 타인이 발표한 작품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sup>26)</sup> 이들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한 “합리적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

25) 저작권법 제3조.

26) 조동제, 문준조, 전계논문, p.35.

## 2.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률체계

서구의 일반 선진 국가들이 1~2백년의 시간에 걸쳐서 제도를 발전·수립한 것에 비해, 중국의 개혁은 외국에 대한 개방정책을 수행한 이래 1983년부터 특허법을 시행하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국제적 기준에 합당한 제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우선 중국의 자국 내 법률 체계를 살펴보면 중국의 법률은 대부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원의 행정법규와 각 부서가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다룬다. 물론 한국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순으로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특히 경제관련 법률의 경우, 법의 제정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sup>27)</sup> 입안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행정법규와 행정규칙에 의존한다. 특히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정하는 행정규칙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행정규칙은 법률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sup>28)</sup> 행정규칙은 현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너무 빨리 제정되고 수정되고 폐지되어 지속성이 약하고, 각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두고 부서별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sup>29)</sup>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는 체계적이고 통일성을 갖춘 법률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체계는 <표 1>과 같이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에서 제정한 단행법률, 국무원에서 제정하는 행정법규, 국무원의 각 부서에서 제정하는 행정규칙<sup>30)</sup>,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지방정부에서 제정하

27) 중국에서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는데, 하나의 법률이 초안에서 제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5-6년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법, 회사법, 대외무역법, 물권법 등 주요법률은 10년 정도 소요되었다.

28) Peter Feng,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 Sweet & Maxwell Asia, 1997, p.12.

29) 吳漢東, *中國知識產權藍皮書*, 北京:北京大學出版社, 2007, p.40.

30) 국무원에서 제정하는 행정법규는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되고, 행정규칙은 한국의 부령에

는 지방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중국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법률

구분	명칭	제정기관	제정일자	수정일자
단행법률	상표법	전인대 상무위	1982.08.23.	1993.02.22. 2001.10.27.
	특허법	전인대 상무위	1984.03.12.	1992.09.04. 2000.08.25.
	저작권법	전인대 상무위	1990.09.07.	2000.10.27.
행정법규	상표법 실시조례	국무원	1983.03.10.	1988.01.03. 1993.07.15. 1995.04.23. 2002.08.03.(신규제정)
	특허법 실시세칙	국무원	1985.01.19.	1992.12.12. 2001.06.15.(신규제정)
	특허대리조례	국무원	1991.03.04.	
	저작권법 실시조례	국무원	1991.05.30.	2002.08.02.(신규제정)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국무원	1991.06.01.	2001.12.20.(신규제정)
	식물신품종보호조례	국무원	1997.03.20.	
	집적회로설계보호조례	국무원	2001.04.02.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국무원	1995.07.05.	2003.12.02.(신규제정)
	저작권집체관리조례	국무원	2004.12.22.	
	음악·영상제품관리조례	국무원	2001.12.25.	
	인쇄업관리조례	국무원	2001.08.02.	
	특수표식관리조례	국무원	1996.07.13.	
올림픽표식보호조례	국무원	2002.02.04.		
부서별 행정규칙	대만동포특허신청에 관한규정	지식산권국	1993.05.01.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실시방법	해관총서	1995.09.28.	
	상표평가심사규칙	공상행정관리총국	1995.11.02.	2002.09.17. 2005.09.26.
	특허자산평가방법	특허국, 국유재산관리국	1997.04.20.	
	특허대리기구연례심사방법	특허국	1998.01.16.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농업부	1999.06.16.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임업부문)	임업부	1999.08.10.	

해당된다.

집적회로설계행정집행방법	지식산권국	2001.11.28.	
특허행정집행방법	지식산권국	2001.12.17.	
특허권실시허가계약등록관리방법	지식산권국	2001.12.17.	
음악·영상제품 도소매·입대관리방법	문화부	2002.03.28.	
음악·영상제품 수입관리방법	문화부, 해관총서	2002.04.17.	
특허대리처별규칙	지식산권국	2002.12.12.	
농산물 신품종권 대리규정	농업부	2002.12.30.	
농산물 신품종권 침권안건처리규정	농업부	2002.12.30.	
유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	공상행정관리 총국	2003.04.17.	
마드리드상표 국제등록실시방법	공상행정관리 총국	2003.04.17.	
특허표기 및 특허번호표기방식규정	지식산권국	2003.05.30.	
특허대리관리방법	지식산권국	2003.06.06.	
특허강제허가실시방법	지식산권국	2003.06.13.	
저작권행정처벌실시방법	판권국	2003.07.24.	
중외합작 음악·영상제품판매기업관 리방법	문화부, 상무부	2003.12.08.	
음악·영상제품출판관리규 정	신문출판총서	2004.06.17.	

지적재산권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중국도 이에 관한 국가 간 또는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국제 공약, 조약 및 협정에 참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가입한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역시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률의 체계의 구성부분이 된다.

아래 <표 2>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은 1980년 6월 3일 정식으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하였다. 이는 중국이 최초로 가입한 지적재산권 국제조약이란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후 1883년 체결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파리협약’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시작한 중국은 1989년 국제 상표의 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협정’의 4번째 가입국이 된다. 또한, 예술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된 ‘베른조약(berne

convention)’과 ‘세계관권공약’, ‘음반물 불법복제방지 공약’,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에 관한 조약인 ‘부다페스트 조약’을 체결하였다. 1994년에는 상표등록 목적을 위해 사용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 협정인 ‘니스 협정’과 ‘특허 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에 서명 하였으며 1996년엔 공업품 의장 국제 분류에 대한 ‘로카르노 협정’을 체결하는 등 각종 국제 조약의 성원국이 되었다.

<표 2>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

국제협약	내용	가입 시기
WIPO 협정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협회	1980. 6. 3
Paris 협정	산업재산권 보호	1985. 3 19
Madrid협정	상표의 국제등록 및 상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	1989. 10.4
베른공약, 세계관권공약	문학과 예술 작품 보호	1992. 10.15
세계저작권 협약	저작권 로열티 이중과세 방지	1992. 10.30
제네바 협약	음반 복제 방지	1993. 4.30
특허협력조약(PCT)	특허의 국제화	1994. 1.1
식품신품종에 관한 국제협약	식물신품종 관련 특허	1999. 3.23
니스협정	상표등록용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국제 분류	1994
마드리드 의정서	한 건의 국제출원만으로 여러 나라에 상표 보호	1995
부다페스트 협약	특허절차에 이용되는 미생물의 보호	1995
로카르노 협정	공업품 외관설계의 국제분류에 관한 협정	1996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협정	1997
WTO TRIPs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규제	2001

자료: 中國國家知識產權局: <http://www.sipo.gov.cn> 에서 정리.

중국 특허국은 특허협력 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의 성원국으로서 국제 특허의 신청, 접수, 국제 검색, 1차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이다. 이렇게 중국은 이미 WIPO와 세계 지적 재산권 주요 조약의 성원국으로 부상하였고, 지적 재산권 집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개진하고 있다.<sup>31)</sup>

특히 2001년 12월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 WTO의 제143대 성원국이 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측면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TRIPs등 관련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의 지적재산권은 2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발전하여 왔다.<sup>32)</sup>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고 이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관련 국제조직 활동을 적극 참가해 세계 각국 지적재산권 관련 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 제2절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 1.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

지적재산권 제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신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적 발전단계의 초기에는 무단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개발도상국가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개발도상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정책적인 지원기반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의 이러한 무임승차 행위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거부감을 갖고 이를 국제적 규제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sup>33)</sup>

31) 황경호, 전계논문, p.21.

32) 최병규,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저작권 환경변화”, 『경영법률』 제8집, 1998.11, p.556.

33) 유상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과 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23~24.

중국의 경우도 지적재산권 제도의 성립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정책적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1979년의 개혁·개방정책 이전에는 사실상 중국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9년 개혁·개방정책 이후에도 1983년 상표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성립을 가져왔다.<sup>34)</sup> 그러나 1985년 특허법의 경우 외국 기업의 특허 출원시 관련 기술에 대한 제출 등과 같이 중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규정이 존재해서 많은 선진 국가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정치체제상의 한계점으로 경제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개정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혁·개방정책을 유지하였지만 이의 주체를 중국 공산당에 한정시켰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민심의 소란을 염려하여 지나친 경제 개혁에 대하여 정치적 주체의 반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둘째,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할 경우 로열티를 통해 지불해야 하는 외화의 부담이 컸다는 점, 중국이 1980년 당시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주력하였던 경공업분야의 제품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가장 큰 경쟁요인이 되는데, 외국의 기술 보유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던 집단의 대부분이 국유기업이었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확립을 저지해 왔다는 점, 당시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 조직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국유기업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의 이익을

---

34) 이종민, 전제논문, p.23.



중시하여 지나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도입을 조직적으로 반대하였다.<sup>35)</sup>

넷째 1980년대에 중국이 필요로 했던 기술이 첨단산업의 기술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노동집약적 산업의 단순 기술 분야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기술자체의 습득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상표의 도용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판매를 하여 많은 이득을 얻고 있었고, 기술습득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도입 유인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보다도 이의 방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태도도 1990년에 들어오면서 바뀌게 되었다. 2004년 국무원 부총리 우이(吴仪)를 팀장으로 하는 <국가지적재산권보호업무팀(国家保护知识产权工作组)>을 조직하여 중국 전역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4월 상무부 세계무역처(世贸司) 장샹첸(张向晨)처장은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내법이 WTO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발표한 후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까지 공표하게 되었다.<sup>36)</sup>

중국정부가 첫 번째로 제정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요강을 발표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 요강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

35) Sumner J. La Croix,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Understanding Convergence to Global Standards",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 (1995.5), p.3.

36) 유상준, 전계논문, p.27.

<표 3>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요강의 6대 중점사항

불법복제행위 (해적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복제행위 엄격히 단속</li> <li>· 해적판 CD 판매 불법 노점과 행사 단속 및 철거</li> <li>· 지속적으로 정품소프트웨어 권장 캠페인 확대</li> </ul>
상표 무단 복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표 무단 복제가 심각한 시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계자의 관리 책임 강화</li> </ul>
특허권 무단사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과 약품, 농업 및 신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특허권 보호조치 강화</li> <li>· 특허권과 관련된 사기행위의 지속적 단속 및 처벌, 특히 반복적인 특허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 억제</li> </ul>
무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에서 적극적으로 선진적인 검사기술을 도입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검색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유통경로 차단</li> <li>· QEM 기업에 대한 감시·C관리와 서비스 체계 구축</li> </ul>
무역박람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무역박람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li> <li>· 국내외 범죄자들이 무역박람회를 통해서 불법 복제품 등을 가공, 생산, 판매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li> </ul>
범죄 신고서비스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50개 대도시에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신고 서비스센터 설립</li> <li>· 완벽한 안건 처리와 업무 연계, 철저한 감시·관리, 업무 처리 이후의 피드백, 일관된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업무 처리 능력 강화</li> </ul>

이러한 중국의 정책변화의 배경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개방의 필요에 의한 외국기업의 자본 도입과 첨단산업의 신기술 도입 필요성 증대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투명한 시장 자체가 이루어져 있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해외 직접투자의 유치와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의 도입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둘째,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았던 선진국의 공산품 시장에서 선진국에 비해 자신들이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보호를 주장하면서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켰다.

셋째, 중국 정부의 WTO가입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노력하였다.<sup>37)</sup> 중

국 정부는 WTO의 가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 정부는 WTO가입을 통하여 국제적 지위와 대외 신용도의 향상, 개혁·개방정책의 가속화로 경제체제 개혁과의 상호 상승작용 추구, 쌍무협상을 통해 획득하였던 최혜국 대우는 모든 국가로부터 무차별적 획득을 통해 수출 증대,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가입을 통한 선진국이 부과하는 일반특혜관세 혜택 향유를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2000년 5월 현재 미국과 EU와의 WTO가입 협상을 종결지었다.

최근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법규를 TRIPs 및 기타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 2. 중국 지적재산권의 보호 유형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행정적 보호와 사법적 보호를 통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 국가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대부분 사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주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벌금부과 조치와 같은 행정적 처벌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 가. 행정적 보호

먼저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란 앞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관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기업에 대한 행정적 처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상표권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상표국이나 상표평심위원

37) 김익수,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 경제와 한·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1995.12), pp.69~74.

38) 이종민, 전제논문, p.20.

회, 특허권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지식산권국, 저작권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관권국을 통하여 권리 침해행위의 정지명령이나 위법소득의 몰수, 권리침해에 관련된 상표 및 도구의 몰수,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sup>39)</sup>

하지만 지적재산권에 관해 행정 각 부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표권 보호를 위한 행정 처분권과 행정조정권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또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sup>40)</sup>

만약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기술감독국(TSO)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은 침해품에 대한 몰수 폐기의 권리는 가지지 못하는 데 비하여 품질기술감독국은 침해 물품의 몰수 폐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형태의 산업재산권의 분쟁에 있어서는 오히려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유리할 수도 있다.<sup>41)</sup> 하지만 품질기술감독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상표권을 위반한 상품이 중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해관총서에 있는 불법제품을 압류하든지 또는 보호하고자하는 상표나 또는 특허권 등을 미리 세관에 등기해 둔 후 각 세관에서 모조품을 발견하는 경우 사실을 권리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분야에서 국가지적산권국은 권리 침해자에 대한 침해행위의 정지명령이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행정조정권은 갖고 있지만 행정 처분권은 갖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허기관에 제소된 특허분쟁의

39) 중국 상표법 제53·54조, 특허법 제57·58·59조, 저작권법 제47조.

40) 전맹,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23

41) 오병분, “중국에서의 한국기업의 특허 및 상표보호전략”, 『발명특허』, 한국발명진흥원, 1998.1 pp.15~16.

조정처리는 신청서와 답변서, 관계증거자료의 제출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게 되면 특허관리기관내의 조정처리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서류들을 심사하게 된다.<sup>42)</sup> 조정처리위원회는 특허분쟁에 관한 조사시에 사실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조정처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조사의 방법은 특허분쟁의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자기주장을 말하는 변론주의가 아니고 제출된 신청서와 답변서에 따라 조정처리위원이 심문을 하고 이를 결정하는 형태가 된다. 즉, 조정처리위원이 심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산업재산권 분쟁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sup>43)</sup> 따라서 자신의 제소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하고 패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강력한 증거의 수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특허분쟁 조정처리절차의 소요기간은 명확한 통계나 규정이 없지만 약 6개월 이내에 거의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관리기관이 직접 침해의 성립유무, 금지명령, 손해배상액, 조정처리비의 부담 등에 대한 처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처리결정사항은 처리결정서에 명기되어 당사자에게 발송됨과 동시에 특허국에 그 부분을 발송 보관하게 된다.

특허에 대한 또 다른 보호방안으로 품질기술감독국(TSO)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품질기술감독국은 제품의 품질에 대해 감독을 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짜 특허번호를 표시하는 위조 상품의 경우에는 품질기술감독국이 몰수 또는 폐기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해관총서를 활용한 보호절차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을 통한 특허권의 보호는 침해물품에 대한 행정조정권

---

42) 장동식,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2006. 9. p.208.

43) 중국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만 있고 행정처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저작권의 경우 국가관권국은 행정 처분권만을 보유하고 있지 행정적인 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가관권국은 권리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중지, 영향제거, 공개사과,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권리침해복제품을 몰수, 소각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증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국가관권국은 주로 권리침해복제품을 제작하는데 쓰인 재료,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sup>44)</sup> 하지만 형사적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은 사법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행정기관이 가진 지적재산권의 보호권한을 모두 종합해 보면 정부 관리부문이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자가 가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사권리에 대한 최종적인 재정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법기관이 결정권을 갖는 구미의 국가나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와는 다른 부분이다.<sup>45)</sup>

## 나. 사법적 보호

재산권의 사법적 보호는 사법경로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중국은 각급 법원에 전담부를 설치해서 관련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일부 성 직할시의 인민법원, 성급 인민정부 소재지 경제 특구 중급법원의 지적재산권 심판장 또는 유관 심판장에서 전문적으로 지적재산권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정을 설치하여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사법적 보호의 범위는 특허 저작권 저작 인접권 및 부정경쟁방지의 권리 등 지적성과물과 관련한 일체의 무형적 재산권과 인격 권리에 대한

44) 장동식, 전제논문, p.209.

45) 이규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외자기업의 소송대책,” 『법제통권』 제558호, 법제처, 2004. 6. p.14.

보호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인민법의 지적재산권 심판정은 기술양도 기술합작 등 각종 기술 계약분쟁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sup>46)</sup>

현재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판단은 특성의 법정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지적재산권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법정은 현재 북경과 상해의 3개 간이(簡易) 법원과 북경, 천진 및 상해를 포함한 17개의 지방법원, 북경과 상해 등 10여개의 고등법원, 대법원인 인민 최고 법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sup>47)</sup>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한국과는 달리 2심제 또는 단심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심판 중 특허부문만이 2심제로 되어있고 나머지 실용신안과 의장 및 저작권, 상표권, 관련 심판은 단심제로 되어 있다. 특허관련 심판이 2심제로 된 이유는 특허관련 심판이 다른 부문과는 달리 고급기술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심사관의 사정에 대한 불복이나 지식산권국의 최소 결정이나 유지결정에 대한 불복, 무효심판과 같은 특허관련심판은 특허복심위원회에서 1심이 행해지고 인민법원에서 2심이 행해지게 된다.

중국의 인민법원이 수리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은 상표권의 경우 상표권 행정사건(행정처분 불복 등), 상표권 침해사건, 상표권 사용 면허 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상표권 범죄사건이 인정되고 특허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에 관한 행정사건, 특허권에 관한 민사사건, 특허권에 관한 범죄사건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침해의 분쟁사건이나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15가지 침해행위, 저작권의 면허계약을 둘러싼 분쟁, 저작권의 권리귀속을 둘러싼 분쟁, 국가관권국이 실행한 행정처분 손해배상명령 등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외에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사건과 상업비밀 관련 사건, 부정경쟁 관련 사건,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계약 관련 분쟁 등을

---

46) 이춘삼, 《중국통상법》, (서울: 대왕사, 2004), p.404.

47) 전맹, 전개논문, p.25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sup>48)</sup>

현재 중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외국인이나 법인도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언어와 관습 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국의 변리사나 변호사를 현지의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 3.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 가.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중국 정부는 WTO에 가입하고 TRIPs를 체결한 이후, 관련 규정을 이행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국무원에 ‘국가지적재산권 보호공작조’를 설립하여, 보호정책의 집행을 총괄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라 할 수 있다.<sup>49)</sup>

중국 공산당 중앙 총서기 후진타오는 2005년 10월 중앙공산당 16차 중국 전국인민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같은 해 10월 원자바오 총리 역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건의 제정에 관한 설명> 중 지적재산권 보호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에 앞서 2005년 1월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할 목적으로 국가지식산권국, 공상총국 등 국무원 산하 23개의 정부 부처를 총괄하여 Task Force 형태인 ‘국가지적재산권 보호 영도소조’를 설치했다.

2005년 6월 30일 우이 부총리는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제정업무 영도소조 제1회 회의를 주최하여, 국가지적재산권 전략제정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세계 각국의 관심 하에 채택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은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의 개선, 지적재산권 법 집행

48) 장동식, 전계논문, p.211.

49) 중국경제현안브리핑, "최근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 KIEP 북경사무소 (06-9호), 2006. 6. 27, p.4.



강도의 강화, 지적재산권 인재육성 강화, 전 사회적 지적재산권 의식 강화 등을 총괄하는 주 프로젝트 20건과 개요 1건으로 이뤄져 있다.<sup>50)</sup>

이 전략을 통해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관련 부서별 업무 분배, 지적재산권 창조, 관리, 이용 및 보호체계 제정, 네트워크 구성, 지적재산권 서비스 체계수립과 강화, ‘자주적 창조 성과물’을 지적재산권으로 전환 또는 상품화 하거나 산업화를 촉진하는 조치,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원 관공청은 동 전략이 완성되기 전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지식재산권 보호행동 강요(2006-2007)》로 담아내었다.

<표 4> 지적재산권 보호과정에 관한 주요 내용

분야	주요내용
지적재산권 입법	· 상표, 판권, 특허, 세관에 대한 지적재산권 법안 제정 또는 수정 ·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법 해석의 수정 또는 제정 또는 수정
지적재산권 법집행	· ‘산독수리 작전’, ‘태양빛 작전’등 대규모 특별 단속활동과 일상적 단속 활동과 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보호 메커니즘 구축	· 신고서비스센터 설립, 지적재산권 통계 공개 등
지적재산권 홍보	· 지적재산권 보호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
교육 훈련	· ‘지적재산권 인재 프로젝트’를 통한 지적재산권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제 지적재산권 교류협력 기업의 지식재산권	· 입법, 상표, 판권, 특허, 세관보호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19건 중 대미관련 내용이 9건)
인식도 제고	· 지적재산권 보호 대회 개최 · 대기기업의 S/W 정판 사용을 위한 방안 제정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검색시스템 설치, 상표등록 절차 간소화, 상표 심의와 중재 등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동 내용을 근간으로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공작조는 2006년 《2006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지적재산권을

50) KOTRA 북경무역관, 『2006년 중국지재권 보호 백서』, KOTRA, 2007.1.31, pp.4~7.

보호하기 위해 각 유관기관들이 수행할 사업을 종합한 ‘지적재산권 종합 계획서’로 당해 연도의 중국 각 유관 부서별 세부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은 장기전략, 잠정지침, 연간 세부사업 등 3단계 층상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의 장기 전략을 제시하여 지적재산권 강화 사업에 대한 정부 주도적 종합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의 구조

수준	정책명	내용	작성부서	작성주기
1단계 (전략)	국가지적재산권 전략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의 장기전략 제시	국무원 국가지식산권 전략 영도소조	장기
2단계 (잠정지침)	06-07 지적재산권 보호 행동강요	지적재산권 강화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지침	국무원 판공청	임시 (전략 수립 이전의 잠정지침)
3단계 (세부사업)	2006, 지적재산권 행동(작전)계획	지적재산권 관련 정부 부서가 작성, 취합한 종합 사업계획	국무원 지적재산권 보호 공작조	연간

#### 나.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 시스템 구축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시스템 구축 실행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센터망을 가동하였다. 2006년 중국정부는 베이징(北京), 이우(義烏), 윈저우(溫州), 충칭(重慶), 티벳(西藏), 산둥(山童), 린윈강(連雲港)등 중국 주요지역에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서비스센터 50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중국전역에 걸쳐 전화번호 ‘12312’로 통일된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12312’ 핫라인은 신고를 접수 받아 자문을 제공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관 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다시 통지하는 서비스로, 전화에 의한 지적재산권 애로과약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중국지적재산권 판결문서 공개 사이트의 개통이다. 2006년 3월 지적재산권 판결문서 공개홈페이지(中國知識產權判文書網, <http://ipr.chinacourt.org/index.php>)를 개설했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하이난(海南), 산둥(山東), 충칭(重慶), 광둥(廣東) 고등법원도 지방 지적재산권 판결문서 공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최신 판결문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개통한 후 11월까지 약 9개월간 중국 지적재산권 판결문서 사이트에 등록된 문서는 총 5,318건이다.

중국 지적재산권 판결문서 사이트는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심판청과 중국 법원망(中國法院網, <http://ipr.chinacourt.org/index.php>)이 공동 구축하였으며, 판결문을 공개, 과거 문제시 되어오던 중국 지적재산권 심판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 화물 세관압류 등록조치 완화이다. 수정된<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는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한 압류 청구시의 사전등록 의무규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권리인은 복잡한 사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혐의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에게 압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에 세관등록은 해 두는 것이 절대 유리한 것은 등록 후에 세관은 일상적으로 직권에 의한 침해 혐의화물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은 확인되는 즉시 권리인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조치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세관에 사전등록하면, 권리침해행위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지적재산권 등록정보가 세관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화물을 생산한 기업에 대한 경고가 되어 수출입 권리 침해화물의 위법행위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해관총서 홈페이지 [www.customs.gov.cn](http://www.customs.gov.cn)), 현재 통관 중 발견되는 권리 침해 화물의 절

대 다수(90%이상)가 세관에서 적발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 제3장 중국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침해현황

### 제1절 중국의 지적재산권의 등록 현황

#### 1. 특허권 등록 현황

2006년 10월 말, 중국이 보유한 유효특허 중 중국 국내 취득건수가 57만 4,337개,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가 18만 2,010개로 총 75만 6,347개에 달하며, 이 중 발명특허가 20만 4,805개, 실용신안특허가 29만 1,460개, 의장특허가 26만 82개로 실용신안특허가 가장 많았다.<sup>51)</sup>

2005년 중국에 출원된 특허신청은 총 47만 6,264건으로 2004년 35만 3,807건에 비해 34.6%가 증가 했으며 특허권 획득권수는 총 24만 1,003건으로 2004년 19만 283건에 비해 12.5%가 늘어났다. 2004년에는 중국 내 특허 신청 건 증가율이 국외 신청 건 증가율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등 중국현지 기업들의 신청이 크게 증가하였다.<sup>52)</sup>

아래 <표 6>는 중국내의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의장특허의 출원 및 등록현황을 정리하였다. 중국 자국내 3가지 분야 모두 출원 건수를 살펴 보면, 발명특허 같은 경우는 60만 3,394건, 실용신안특허는 132만 7,779건, 의장특허는 93만 3,914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출원 건수에 비해 등록건수는 발명특허는 12만 1,908건, 실용신안특허는 87만 3,123건, 의장특허는 58만 6,938건으로 출원건수에 비해 등록건수는 50%에 머물고 있다. 해외 출원건수에 대한 등록건수는 국내의 등록건수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이 또한 여전히 출원건수에 비해 등록건수는 낮은 편임을 살펴 볼 수 있다.

51) 김명신, “2006년 중국의 특허 보유 현황 분석”, KOTRA, 2007. 2. 27.

52) 김명신, “2005년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분석”, KOTRA, 2006. 5. 15.

<표 6> 중국내의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1985. 4~2007. 4)

(단위: 건)

지역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국내	603,394	121,908	1,327,779	873,123	933,914	586,938
해외	5,538,808	195,823	9,674	7,087	77,341	62,636
합계	6,142,202	317,731	1,337,453	880,210	1,011,255	649,574

자료: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http://www.sipo.gov.cn> 에서 정리

2006년 4월 26일 중국 과학기술부 쉬관화부장이 발표한 지적재산권 현황보고에 따르면 중국내의 특허신청의 절반가량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중국내 특허권의 상당수를 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졌다.<sup>53)</sup>

분야별로는 무선전송기술 분야에서 외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허 보유 건이 전체의 9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이동통신(91%) > 반도체(85%) > 양약(69%) > 컴퓨터(6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컬러 TV, 휴대폰 핵심기술의 절반가량도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은 판매액의 상당부분을 특허료로 지불하고 있다.<sup>54)</sup>

종류별로는 국내에서 취득한 자국 실용신안특허가 전체의 50.1%로 과반수를 넘으며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장특허(38.5%) > 발명특허(11.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국내취득 특허건이 전체의 75.9%로 절대적으로 높고 해외취득건수는 24.1%로 전체의 1/4를 차지함을 볼 수 있

53) 이익수, 전게서, p.27.

54) 김명신, 전계보고서, p.2.

다.<sup>55)</sup>

현재 중국내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은 0.0003%에 불과하며 99%의 기업은 특허를 신청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기업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연례 조사 발표 결과에 의하면 응답 기업의 41%가 2005년 한해 중국의 모조품 생산이 증가했다고 답변했고, 55%는 자사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 따른 최근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sup>56)</sup>

## 2. 상표권 등록 현황

최근 중국은 쏟아지는 상표신청 폭주로 인하여 제때 상표권 등록 어려워졌다. 2005년 실제 출원되는 상표권은 신청량의 1/3에 불과한 것 <표 7>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표 7> 중국 2002년~2005년 상표 신청 및 출원동향

(단위: 건)

항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상표 신청건수	321,034	405,620	527,591	593,382
갱신 신청건수	12,783	18,655	18,071	20,009
이의 신청건수	3,516	5,675	10,245	10,849
출원건수	169,904	206,070	225,394	218,731

자료: 공상행정관리총국.

매월 평균 약 6만 건 정도의 상표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상표권 신청량 급속한 증가로 인해 현재 계류 중인 상표 신청건만 150

55) 중국경제현안브리핑, p.2.

56) <http://www.eastasianstudies.org/image/party-state.gif> (방문일: 2007년 7월 28일)

만 건에 달하고 있다. 반면 상표국 심사원은 200명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 1년간 실제 심사건수는 30만 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상표 공시기간 중 이의 제기로 인해 계류돼 있는 건을 포함하면 매년 실제 등록되는 신상표는 신청량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1979년부터 2006년 말까지 중국의 상표등록 신청량은 84배가 늘었으며, 매년 신규신청 상표수량 세계 1위를 차지한다. 2006년 중국 상표 신청량은 미국 신청량의 2배에 달하는 70만 건을 넘어섰고 최근 몇 년간 신청량은 매년 10여만 건씩 늘고 있다. 중국 상표 신청량이 급증한 것은 기업 상표의식 제고와도 관계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2003년 상표대행시장이 개방된 후 누구나 상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누구나 10만 위안의 등록 자본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상표 대행 기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상표 대행 기구는 149개사에서 2,800여 개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상표대행기구의 난립으로 인해 상표 대리 비용은 과거의 절반 수준인 400~600위안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유명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 후 이를 고가에 되파는 전문적인 상표투기꾼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일부 대행 기구에서는 대리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기업들에 전방위적인 상표등록을 권유해 한 상표를 수십 개 분야에 동시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sup>57)</sup>

상표국 관계자도 수십 건 심지어는 수백 건의 상표등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이 상표투기꾼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절차상 한건씩 수리 및 심사를 해야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단순 상표권 처리지연으로 인한 리스크 또한 크게 작용한다. 중국 상표 심사주기는 일반적으로 2년 반에서 3년이 걸리고 있으며, 신청량이 많은 분야는 더 지연되고 있고 신청량이 많은 의류상표의 경우 브랜드 주기가 4년에 불과한 반면, 상표권 신청에서 취득까지 3년여의

---

57) 고봉숙, “中, 상표신청 폭주로 제때 상표권 등록 어려워”, KOTRA, 2007.9.5.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표권 취득 후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일부 기업들은 상표권 신청만 해놓은 상태에서 각종 광고홍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만약 상표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동안 투입됐던 자금 등 감당해야 할 리스크도 커진다.

상표국 관계자들은 일부 대행기구와 상표투기꾼들이 상표 초보심사 공시기간 중 악의적인 이의를 제기해 상표심사시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시간에 쫓기는 신청기업들을 압박, 이의제기 취소를 대가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표문제는 단시일 내 해결은 어려울 듯 보인다. 2007년 2월 상표국은 ‘자연인 상표등록 신청 주의사항’을 발표, 개인의 중국내 상표 등록조건을 제한했으며 상표의 이의·기각 등 절차에서 악의적인 신청등록을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최대 한 빠른 시일 내 기각하는 등 심사속도를 높인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국은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규 개정될 상표법(商標法)에 희망을 걸고 있으나 개정될 상표법은 초안이 빨라야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한다.<sup>58)</sup>

### 3. 저작권 등록 현황

저작권 관련 법률제정이 잇따르자 저작권 등록 건수도 급증하였다. <표 8>는 중국의 저작권 등록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저작권 등록 시에는 출판권 계약은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출판권 계약 건수가 2003년 이래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유독 정기간행물 출판권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저작권 등록의 경우,

---

58) 이규철, 전제논문, p.28.

2000년 3,174건에 불과하던 등록 건수가 2005년에는 58,523건으로 급증하였는데, 저작권보호에 관한 각종 제도와 법률의 개선으로 인해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중국의 저작권 등록현황 (2000년~2005년)

(단위: 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출판 권 계약	도서	7,981	8,658	10,440	12,601	9,704	9,176
	정기간행물	11	9	319	529	288	746
	음악영상 제품	657	49	72	397	58	140
	전자출판물	324	420	300	371	592	168
	소프트웨어	984	1,121	684	528	572	557
	TV프로 그램	-	-	-	-	1	-
	기타	-	25	21	65	9	-
	합 계	9,968	10,282	11,836	14,491	11,224	10,787
	저작권	문자작품	715	939	1,184	1,249	1,308
구술작품		1	-	-	7	1	128
음악작품		198	182	188	180	260	855
설창(說唱) 작품		5	475	9	14	3	12
					3	14	13
서커스		-	-	5	5	-	2
미술작품		2,067	4,614	9,444	9541	9,929	51,327
					488	906	3,681
건축 작품		-	-	-	-	-	12
영상작품		49	168	75	50	151	52
설계도		36	90	87	223	293	337
지도		29	22	8	7	9,191	52
모형		-	-	-	1	8	7
기타		74	308	72	241	145	167
합 계	3,174	6,801	11,067	12,009	22,209	58,523	

자료: 中國國家版權局: <http://www.ncac.gov.cn> 에서 정리.

## 제2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현황

중국내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연구를 행하면서 부딪친 현실적 문제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해서 공인되거나 또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조사, 발표한 종합적 차원에서의 기초자료나 통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간의 개별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의 신고나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는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sup>59)</sup> 그리고 구체적인 침해사례가 발표되는 경우 경쟁기업에 의한 시장교란행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를 입은 기업에 의한 문제제기나 발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 변화됨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기관들의 노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관련 기관들에 의한 조사와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면서 분쟁과 관련된 통계치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자료들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리된 것이 아니라 개별기관의 필요에 의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내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현황을 중국내 개별 기구들이 발표한 통계치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해 보려고 한다.

먼저 중국내에서 1998년 이후부터 2004년까지 중국의 공안 당국에 의해 입건된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은 총 7,874건으로 그 추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0)</sup>

---

59) 전맹, 전계논문, p.33.

60) 中国国家知识产权局 <http://www.sipo.gov.cn/> (방문일: 2007년 10월 12일).

## 1. 특허권 침해 현황

2005년에 특허관리기관에 신고된 특허권 침해건수는 총 4,767건인데 이 중 특허사칭 건수가 2,808건으로 전체 특허관련 건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특허침해가 1,313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총 2,236건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특허침해에 관한 건수가 1,227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5년에는 특허사칭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였지만 2006년에는 특허침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2006년은 2005년에 비해 50%이상이 감소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허사칭에 관한 건수는 70% 가까운 감소를 보이며 특허 도용에 관한 건수와 함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9> 특허권 침해 신고 현황

(단위: 건)

	침해	도용	특허 사칭	기타 특허 분쟁	합계
2005년	1,313	362	2,808	284	4,767
2006년	1,227	33	933	43	2,236

자료: 中國國家板權局: <http://www.ncac.gov.cn> 에서 정리.

## 2. 상표권 침해 현황

금액(위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98년에 적발된 피해액은 총 2억 1천 만 위안이었으나 2004년에는 6억 3천만 위안으로 나타나 약 3배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61)</sup> 전체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중 상표권

61) 연간 증가율은 42%에 달하고 있다.

침해의 경우는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2)</sup>

<표 10> 중국의 상표권 침해 현황

(단위: 건)

구분	상표침해		
	국내 상표	외국상표	합계
2001년	20,283	2,530	22,813
2002년	21,415	2,124	23,539
2003년	24,395	2,093	26,488
2004년	34,770	5,401	40,171
2005년	42,642	6,770	49,412
2006년	21,248	9,286	50,534

자료: 中國國家板權局: <http://www.ncac.gov.cn> 에서 정리.

상표권 침해 건수는 중국 자국 내에서 침해 건수와 외국 상표와 자국 간의 침해 건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중국 자국 내 상표권 침해보다 외국상표에 관한 상표권 침해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외국 상표 침해 건수는 2003년 기준으로 하여 급격히 상승하는데 2003년 2,093건이지만 2004년에는 5,40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sup>63)</sup>

상표권 침해사건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49,412건이 제기되어 전년 대비 81.2%나 증가하였다. 전체 상표권 침해사건 중 외국기업에 관한 사건은 전체의 15.8%인 6,770건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1.25배나 급증하였다.<sup>64)</sup>

62) KOTRA, "중국 2005년 지적재산권 침해사건 전년대비 50% 증가" 『IP동향』 통권185호 2006.1.27.

63) 2005년도 지적재산권련 침해사건(형사사건)수도 총 1,799건으로 2004년도에 비해 5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4) 2005년의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22,000건의 상표침해사례를 적발하였는데, 이중 3,530건이 외국상표를 침해한 상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사법기관에서 처리된 사건은 132건이다.

### 3. 저작권 침해 현황

저작권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관권국이고, 지방정부에는 저작권관리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관권국에서는 전국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사건과 섭외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지방 정부의 저작권관리부서는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작권 교역활동을 감독한다.<sup>65)</sup>

<표 11>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전체 건수가 6,107건이고, 2003년에는 22,429건으로 거의 3배 넘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11> 저작권 침해 신고 현황

(단위: 건)

	당사자 국적별 사건 수		
	섭외사건	국내사건	합계
2002년	41	6,066	6,107
2003년	85	22,344	22,429
2004년	15	964	979
2005년	43	8,426	8,469

자료: 中國國家版權局: <http://www.ncac.gov.cn> 에서 정리.

2004년을 제외하고 2005년도 8,469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까지 급속도로 저작권 침해건수가 증가하다가 2004년에 979건으로 2003년의 22,429건의 23배에 달하는 건수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많이 감소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계획한 2003년에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이 시행됨으로써, 15만 명의 인원을

65) 저작권법 제7조.

투입하여 전국적 규모로 집중 단속을 펼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2003년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상표권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4. 한국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

한·중간 교역량의 확대로 인해서 지적재산권 분쟁도 한·중간 경제협력 확대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2006년간 225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290건의 지적재산권 피해를 당했으며 그 중 중국이 65개로 단일국가로 최고라 하겠다. <표 12>를 보면 기업규모별 침해 발생 연도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001년부터 침해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12> 기업규모별 침해가 발생한 연도

(단위: 개사, %)

구분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대기업	6	2	2	5	6	6	0	27
	22.2	7.4	7.4	18.5	22.2	22.2	0.0	100
중소 기업	7	2	7	8	7	13	4	48
	14.6	4.2	14.6	16.7	14.6	27.1	8.3	100
전체	13	4	9	13	13	19	4	75
	17.3	5.3	12.0	17.3	17.3	25.3	5.3	100

자료: 中國國家板權局: <http://www.ncac.gov.cn> 에서 정리.

최근 중국의 한국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는 상표 모방에서부터 첨단 제품의 특허권 침해, 저작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도 이전에는 생필품 및 노동집약 공업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났지만 2004년 4월에 PDP로 시작된 기업 간 특

허 분쟁은 LCD, 플래시메모리 등의 전문 기술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sup>66)</sup>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 빈발은 중국진출 기업의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품질저하에 대한 인식 확산은 물론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5년 기준 중국 수출기업의 22%와 중국 진출기업의 35.5%만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의 확산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외국 기업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업종별 최초 침해 발생연도 업종별 침해 건수의 증가 추세는 업종별 응답수가 적어 의미 있는 추세를 분석이 곤란하지만 기계업종은 2004년에 가장 많이 침해가 발생(37.5%)했고 자동차·운송기계업종(57.1%)과 컴퓨터소프트웨어(66.7%)은 2005년에 가장 많은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66) 김명신, 전계보고서, p.2.



<표 13> 업종별 침해가 최초로 발생한 연도

(단위 : 개사, %)

구분	2000 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기계	2	0	0	1	3	1	1	8
	25.0	0.0	0.0	12.5	37.5	12.5	12.5	100
전기 전자	1	1	2	4	3	5	1	17
	5.9	5.9	11.8	23.5	17.5	29.4	5.9	100
자동차 운송기계	1	0	1	0	1	4	0	7
	14.3	0.0	14.3	0.0	14.3	57.1	0.0	100
문방구 잡화	0	1	1	1	0	2	0	5
	0.0	20.0	20.0	20.0	0.0	40.0	0.0	100
섬유 의복·신발	2	0	0	1	1	2	0	6
	33.3	0.0	0.0	16.7	16.7	33.3	0.0	100
식품 음료 주류	1	2	0	2	1	1	0	7
	14.3	28.6	0.0	28.6	14.3	14.3	0.0	100
석유화학	1	0	2	2	1	2	0	8
	12.5	0.0	25.0	25.0	12.5	25.0	0.0	100
컴퓨터 소프트웨어	0	0	0	0	1	2	0	3
	0.0	0.0	0.0	0.0	33.3	66.7	0.0	100

자료: 中國國家板權局: <http://www.ncac.gov.cn> 에서 정리.

## 제4장 중국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와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 제1절 중국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 1. 특허권 분쟁 사례

가. 한국 GM대우 vs. 중국吉利자동차<sup>67)</sup>

GM대우의 경차 “마티즈(현재 판매명 Chevy Spark)”를 중국 국영 자동차 업체吉利(영문명 “Chevy”)가 모방해 “QQ”라는 이름으로 소형차를 생산, 판매했다. 이에 GM대우는 QQ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중단과 공개 사과, 경제손실 약 97억 원을 배상하고 해당 차량의 부당 판매수익금 전액을 몰수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하였다.

<표 14>을 보면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실질적인 판매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있다. GM대우는 2003년 6월 처음 마티즈 중국 조립 생산을 시작한 후에 1만 2천대 정도를 판매하였다.吉利의 QQ는 마티즈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출시되어 6만~7만대 정도가 팔려 나갔다. 게다가吉利가 QQ를 동남아 등지에 본격적으로 수출할 경우 GM대우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GM대우는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

67) 최용복, “한·중 지재권 관련 무역 분쟁의 비교 문화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7권 4호 2005, pp.22~24.

<표 14> QQ와 스파크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Chery Sales 2004 vs. 2003			
Products	Sales 2004	Sales 2003	Growth (%)
QQ	49,066	25,186	94%
Fengyun	23,149	45,930	(49)%
Qiyun	5,550	6,926	(20)%
Son of the East	8,802	7,307	21%
Spark	24,487	12,000	104%

자료 : 中國工業汽車協會, <<http://www.caam.org.cn/zsfx3.htm>>에서 재수정

GM대우는 중국에서 외관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특허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동시에吉利는 중국에서 외관디자인을 포함해서 24가지 특허권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04년 9월, 중국 정부는 중국 법률제도와 GM이 제공하는 증거를 검토할 때, 현재까지吉利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없다<sup>68)</sup>고 발표하고 불공정경쟁행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법원에서는 청구 자체를 기각하였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일본 도요타 역시 2003년吉利자동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다.<sup>69)</sup>

#### 나. 중국 河北節能 vs. 蘇州 삼성전자<sup>70)</sup>

원고는 냉장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8년 반도체전도 냉장고에 관한 특허기술을 출원하여 2002년 1월에 특허를 취득하였고, 곧이어 이를 상용화한 40리터 크기의 냉장고를 출시하였다. 2002년 8월, 원고는 자신의 제품과 유사한 냉장고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

68) 中國商務部 副部長 張志剛, 中國知識產權局 副局長 張秦, 記者會, 2004.9.6. p.24.

69) 「法人」, “躲開知識產權的暗器”, 2004.8, p.2.

70) KOTRA, "China Weekly Focus", 2006.7.14, pp.1~2.

았다. 자체 조사결과 해당제품은 원고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피고가 생산한 것이었다.<sup>71)</sup> 피고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투자하여 중국 소주에 설립한 자회사이며 2001년부터 반도체전도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었다.

2002년 9월, 원고는 석가장시 중급인민법원에 특허권침해로 피고를 제소하였다. 심리과정에서 삼성은 자신의 기술이 원고의 기술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특허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쌍방의 동의하에 중국지식재산권 연구회에 사법검정을 의뢰하였고,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003년 9월, 법원은 삼성의 특허침해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삼성은 화해하기로 협의하고 대신 삼성은 상소를 포기하였다. 삼성은 합의서에서 반도체전도 냉장고부문에서 합작하고 원고로부터 핵심부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삼성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2004년 3월 원고는 다시 법원에 판결문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동년 5월, 법원은 삼성에게 30만 위안의 피해보상액 지불을 명령하였다.

## 2. 상표권 분쟁 사례

가. 중국 藍光 vs. 한국 LG산전 & LG전자<sup>72)</sup>

한국의 'LG산전 주식회사'(이하 LG산전) 및 'LG전자'와 중국의 북경시 소재 '藍光엘리베이터공사'(이하 藍光)사이에 있었던 상표권침해분쟁사건이다. 원고인 藍光이 LG산전을 피고로 하여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 제소하였고, 藍光의 신청으로 차후 LG전자를 피고로 추가하였다.

원고인 藍光이 주장하는 바로는, 1991년 8월 10일에 본 공사는 중국 국가공상행정 관리국에 LG상표와 도형(<그림 1>참조)<sup>73)</sup>인 상표를 출원

---

71) 문제가 된 기술은 '열관전도로 분산된 열의 온도차이로 인한 냉각기술'과 '간냉식 온도차를 이용한 냉각기술' 두 가지이다.

72) 商標寶典, <http://markbook.nease.net> (방문일: 2007년 10월 13일)

73) 中國涉外商事審判網., <http://CCMT.org.cn> (방문일: 2007년 10월 13일)

하여 등록받았으며 지정상품은 제7류의 엘리베이터이고, 등록 유효기간은 1991년 8월 10일부터 2001년 8월 9일까지이며, 후에 갱신등록을 통하여 2011년 8월 9일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였다. LG산전은 藍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국 대륙에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대량 판매하고 거기에 藍光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한편, LG전자는 중국대륙에서 엘리베이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藍光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 하였으며 LG산전에 사용을 허락한 바 있다. LG산전과 LG전자의 상기행위는 藍光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중국 상표법과 기타 법규에 근거하여 藍光은 법원의 판결을 구하기로 하였다.

<그림 1> 중국 藍光과 LG산전, LG전자 등록상표



상표등록번호 제560974호



상표등록번호 제958222호

자료: 中國藍光公司. <http://lg-ec.com.cn>

본 분쟁소송을 담당한 중국 인민공화국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소유한 등록상표와 피고가 소유한 등록상표의 도형과 문자는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사하지도 않으며, 이 상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에 의하여 오인이 생길 수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지금까지 엘리베이터의 완성품을 한 번도 생산한 적이 없으며 엘리베이터의 핵심부분의 생산과 엘리베이터의 유지, 수리만을 해 왔을 뿐이었다. 이러한 각도로 볼

경우, 적어도 藍光이 본 사건의 제소를 할 당시까지 원고가 소유한 등록상표와 피고의 등록상표가 엘리베이터류의 상품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이 생기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판결문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청구 이유는 성립되지 않으며, 경제적 손실 역시 끼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 나. 한국의 Wemade & Actoz vs. 중국 盛大

2001년 한국의 Actoz사는 중국 내 대리업체를 물색하다가 盛大(Sanda)와 업무제휴 Actoz사는 Wemade의 ‘미르의 전설’을 포함해 대량의 온라인 게임 제품판매를 대리하고 있는 업체이다. Actoz사는 Wemade에게 ‘만일 盛大가 이익 분배율을 높여 주지 않으면 2년 계약 만기 후 盛大의 대리운영권을 중지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盛大는 ‘傳奇世界: The World of Legend’를 개발 2003년 10월 한국의 Wemade사는 盛大의 ‘傳奇世界’가 ‘미르의 전설’ 상당 부분을 표절하였다고 북경인민법원에 제소하게 된다.

傳奇世界가 온라인 게임의 핵심인 캐릭터, 레벨상승 방법, 그래픽, 사운드 등 게임의 100여 항목에 ‘미르의 전설’ 시스템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미르의 전설’의 중국어 버전인 ‘熱血傳奇’와 유사상표로 오인될 소지가 많으며 盛大가 허위홍보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제소한다.

양사는 비공개 심사 4회, 법정 이외의 수차례 조정 등 과정을 걸쳐 최종적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하고 상기 내용과 유사한 소송을 다시는 제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盛大가 이미 2004년 Wemade의 협력사 Actoz를 인수했고 Actoz사는 Wemade 주식의 절반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차원에서는 이미 두 회사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 3. 저작권 분쟁 사례

#### 가. 한국 NEXON vs. 중국 騰訊公司

2000년,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업체인 NEXON은 중국의 騰訊科技(深圳)有限公司, 深圳市騰訊計算機系統有限公司, 北京萬衆合力科技有限責任公司를 게임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등 항목을 이유로 베이징 제 1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소업체인 騰訊公司是 중국에서 지명도 있는 메신저 “QQ”를 배급하는 업체로, 2004년 말 NEXON사 “BnB”의 게임의 형식, 내용, 디자인 등을 도용해 제작한 “QQ堂”을 배급하기 시작했다. 騰訊公司가 배급하는 “QQ堂”은 게임내 글자체, 디자인 및 배경, 맵 등이 NEXON의 “BnB”와 거의 흡사해 이전부터 저작권 침해여부가 제기됐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같은 캐주얼게임 분야에 배급을 하고 있어 중국의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위반하는 등 NEXON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騰訊科技有限公司, 騰訊計算機系統有限公司, 北京萬衆合力科技公司 등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된다.

NEXON사가 올 3월에 고소했고, 담당 법원인 베이징 제1중급법원은 현재 모든 심리준비가 끝난 상태로, 조만간 판결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 나. 한국 올림피아 vs. 북경 올림피아

원고는 한국 인천에 위치한 보일러 생산업체로서 자체상표인 ‘타원형 OLYMPIA’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1995년부터 원고의 중국 판매 대리상으로 원고의 제품을 중국 내에서 판매해왔다. 1996년 피고는 원고와 동일한 도안을 사용하여 자체 중국어 상표인 ‘奧林匹亞(오린피야)’를 상표국에 등록하였다. 이 때 피고는 도안설계를 구두계약을 통해 전문 설계사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에 첫째, 피고인이 즉시 침권 행위를 중단함과

동시에 전국 성 일간지에 사과문을 공지할 것, 둘째,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 8만 인민폐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1998년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도안을 복제한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후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설계사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sup>74)</sup>

이후 원고는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다. 2000년 9월, 상소법원은 판결문에서 1심법원의 법률적용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지만,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sup>75)</sup>

## 제2절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 1. 분쟁사례에서 제기된 문제점

수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복제품이 범람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선출원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사나 또는 제3자가 고의나 고의가 아니더라도 먼저 특허나 상표 등을 선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사의 권리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자신의 고유권리를 사용할 경우 제3자로부터 권리 사용료나 배상을 요구받게 된다.

앞의 GM대우 자동차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GM대우는 특허등록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삼성전자는 특허출원 과정에서의 기술유출을

74) 北京市 第二中級人民法院 案例文号(1998) 二中知初字第101号.

75) 北京市 高級人民法院民事判決書(2000) 高知終字第10号.



우려하여 특허출원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유사한 특허기술을 취득한 중국의 중소기업에게 제소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그리고 삼성은 재판에 임하는 자세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법원의 위탁을 받아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가 진행한 조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상표침해 사건에는 특히 중국에서 한국기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한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제시한 LG전자 상표권 침해사건이다. 중국 언론들이 藍光이 만약 이긴다면 1억 위안의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고, 지더라도 자사의 상표가 수많은 언론에 노출되어 손쉽게 자사상표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미루어, 藍光이 의도적으로 사전에 철저히 이번 소송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LG전자 역시 앞의 특허권 사례와 같이 사전 준비 없이 藍光이 제기한 상표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저작권 역시 중국 시장의 진출전 안일한 조사와 대처자세 또한 마찬가지다. 상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3자에게 위탁한 도안설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계약서에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책임분담이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수탁자인 도안설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조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원고는 두 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침해 사건의 발생이 우리상품의 대외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샘플이나 도면 등 중요한 정보를 중국 기업에 제공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고 사전에 비밀유지에 관한 협의 또는 계약을 통해 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앞의 분쟁 사례를 통해 중국 진출 기업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 크게 3가지로 제기 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거의 모든 제품에는 선출원주의 원칙 적용됨을 인식하지 않아 특허등록 및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기업의 낮은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률을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침해발생시 침해 대응에 필요한 비용 및 정보의 부족이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법적 구제절차에 대한 인식부족과 법적구제에 드는 비용이 커서 침해행위가 발생해도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셋째, 기업 내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부족이다.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중국 진출시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있다면 침해사례는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조사를 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내에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기업은 사전 예방이 아닌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 대응 방안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따라서 결론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우선 분쟁 발생 시 변호사를 통해 사전 조율해야 한다. 자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적 비용이나 절차, 시간 등을 고려해 볼 경우 직접적인 인민법정에 고소나 고발을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과 사전 접촉, 침해행위의 근절이나 피해보상 등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분쟁 발생시 상황에 따라 유리한 해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담당기관이 분쟁을 조정하도록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을 통한 직접적인 제소도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분쟁사건의 종류에 따라 해결기관 선정에 신중해

야 한다. 특허권, 저작권의 경우에는 인민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며, 상표권의 경우 담당기관인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다수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처리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어느 정도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민법원에 의한 분쟁처리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인민법원의 경우 방대한 서류준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어렵고,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도 발생한다. 또한 변호사 비용과 사건처리비 등 많은 부가비용이 수반된다. 이 때문에 신속한 단속과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간단한 자료 제출 및 절차로 단속이 바로 진행되는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행정기관은 지방마다 조직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지역에서 곧바로 단속활동을 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후 대처하는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분쟁이 발생 전에 기업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5가지 정도로 제시해 보았다.

첫째, 우선 지재권 관련 중국의 법·제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기업들의 중국 진출시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제도와 사회적 관행 등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운용상황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특성과 낮은 발전 단계로 인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당연한 의무가 오히려 권리로 인식된다거나, 외국인에 의한 부당한 과당이익의 착취로 비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 조사업체 등을 활용한다.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사품 단속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유사품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조사업체가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자본에 의한 조사업체도 많이 설립되고 있다. 유사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이러한 전문조사업체를 활용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자신의 특정상품에 대한 시장 감독을 강화하여 조기에 모조상품 출현을 발견하여, 더욱더 큰 단속효과를 누릴 수 있다.

셋째, 계약에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의 삽입이다. 중국 진출기업이 합작투자를 할 경우 합작투자를 마치고 결별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상표나 기술에 대한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대리점의 계약의 경우에도 자사의 상표를 임의로 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력의 채용에 있어서도 자사의 영업 비밀에 대하여 누설 금지조항을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사의 기술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전 생산 공정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역별 분산투자를 통해 전체적인 공정의 노출을 방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사전적 보호와 예방기능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의식 강화 및 현지 실정에 맞는 대응 필요하다. 사건 발생 후 소송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인정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지 문화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과 전문가를 적극적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 산업계 및 정부와의 협력 강화이다. 디자인 도용 및 상표 모방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 기업 및 정부와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디자인 도용 및 상표모방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확대되는 것은 양국 간 협력적 활동이 부족한 데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win-win의 호혜적 시각에서 전문적인 현지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장기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제5장 결 론

중국은 2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1979년의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연평균 9.5%의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세계의 공장, 세계 최대의 자본투자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급기야는 WTO가입으로 세계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제6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세계적인 규범인 WTO TRIPs협정에 근접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법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그 역사가 짧다.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은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한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리지만 중국에서는 지식산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용어상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은 자국내의 지적재산권 법률체계를 개편하고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자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중국의 노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중국 정부는 사법적 보호와 행정적 보호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 출원 및 등록 건수의 통계와 침해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허권에서는 실용신안 등록건수가 가장 많았고, 상표권은 매월 평균 약 60만 건 정도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에서는 도서분야의 등록건수가 가장 많았고 침해현황에서는 상표권 침해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침해현황을 보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최근 들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분야의 침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한·중 간 지적재산권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식부족과 침해 발생시 침해 대응에 필요한 비용과 정보부족, 그리고 기업내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가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현재 WTO 체제 내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정부도 지적재산권 법률체제의 개편과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대한 정책변화를 추진해 왔다. 과거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의식이 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짝퉁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유명 상품의 모방생산과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업자들은 돈벌이가 된다면 모방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기만 하면 그 상품이 타인의 권리침해임을 알면서도 구매하는 경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그 정도가 심하다. 그러므로 중국으로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 할 때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상 리스크를 고려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기업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때 특히 지적재산권의 등록문제가 중요하다. 중국은 ‘선출원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경쟁사나 또는 제3자의 고의에 의해 자사의 특허나 상표 등이 선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사의 권리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자신의 고유권리를 사용 할 경우 제3자로부터 권리 사용료나 배상을 요구받게 된다. 따라서 샘플이나 도면 등 중요한 정보를 중국 기업에 제공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고 사전에 비밀유지에 관한 협의 또는 계약을 통해 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

다. 하지만 중국의 지적재산권 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피해가 중국 전역에 걸쳐 방대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단시일내에 감소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에서 자사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우선 담당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 행위의 정지, 침해제품의 압수 및 폐기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손해 배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침해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한편 협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상의 구제 방법을 통해 자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침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자행되거나 침해행위의 규모가 크고 악질적인 유형일 경우 혹은 경제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관련 정보와 증거를 준비하여 지역공안국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제3자로부터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행정처분이나 세관의 보호조치 및 민사구제·형사상의 제재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중국 유관부서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통해 중국 정부와 한국 기업 간의 win-win 접근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한·중 지적재산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중 지적재산권 보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 할 것으로 본다.

## < 참 고 문 헌 >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강준영, 《중국 진출전략 대특강》, 서울: 중앙 M&B, 2003.

강효백, 《중국법 통론》, 서울: 경희대출판국, 2005.

김익수,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 경제와 한·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12.

이춘삼, 《중국통상법》, 서울: 대왕사, 2004.

#### 2. 논 문

고봉숙, “中, 상표신청 폭주로 제때 상표권 등록 어려워”, KOTRA,  
2007. 9. 5.

김명신, “2005년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분석”, KOTRA, 2006. 5.12.

——, “2006년 중국의 특허 보유 현황 분석”, KOTRA, 2007. 2.27.

김태한, “중국 지적재산권법의 서론적 고찰”, 『법학논총』 23권 1호, 1997.

이규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외자기업의 소송대책”, 『법제통권』  
제558호, 법제처, 2004. 6.

이종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오병분, “중국에서의 한국기업의 특허 및 상표보호전략”, 『발명특허』,  
한국발명진흥원, 1998. 1.

유상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과 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유진석외 2, “한중 지적재산권 분쟁의 현안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7-10호, 2007. 7.23.



- 장동식,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2006. 9.
- 조동제, 문준조, “중국 사회주의시강경제법률체제에 관한 연구”,  
현안분석 2004-20,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30.
- 전맹,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차경자, 최성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2007. 9.30.
- 최병규,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저작권 환경변화”, 『경영법률』  
제8집, 1998. 11.
- 최용록, “한·중 지적권 관련 무역 분쟁의 비교 문화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7권 4호, 2005.
- 황경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원논문, 2006.
- KIEP, "2006 상반기 중국경제 형세 및 하반기 경제발전 전망",  
북경사무소 한·중 경제포럼, 2006. 12.3.
- KOTRA, 『2006년 중국지재권 보호 백서』, 북경사무소, 2007. 1.31.
- KOTRA, "중국 2005년 지적재산권 침해사건 전년대비 50% 증가"  
『IP동향』 통권185호, 2006. 1.27.
- KOTRA, “중국, 외국상표권 침해 2.5배 증가”, 『IP동향』 통권190호,  
2006. 7.25.
- KOTRA, “중국, 상표등록 출원건수 세계최고, 상표침해 적발 강화”,  
『IP동향』 통권180호, 2005. 7.16.
- KOTRA, "China Weekly Focus", 2006. 7.14.

### 3. 기타

중국경제현안브리핑, "최근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  
KIEP 북경사무소(06-9호), 2006. 6.27.

## II. 외국문헌

Peggy E. Chaudbry and Michal G. Walsb,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Counterfeit in International Market*", *Th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ss*. Fall 1996.

Sumner J. La Croix,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Understanding Convergence to Global Standards*",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 (1995.5)

## III. 사이트

<http://www.eastasianstudies.org/image/party-state.gif>

中国国家知识产权局, <http://www.sipo.gov.cn/>

商標寶典, <http://markbook.nease.net>

中國涉外商事審判網, <http://CCMT.org.cn>

<http://china.korcham.net/>

<http://csf.kiep.go.kr/>

# ABSTRACT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in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Enterprises

Lim, Na You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s becoming severe. So,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core technologies that determin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industr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assets such as trade mark or copy right have become the focus of interest.

With this background,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at, the author firstly analyzes the status quo of the IPR protection system in China. Then in the chapter 2, the types of IPR and IPR protection system in China are introduced to find out the efforts of Chinese government to reach the global standard by improving the legal system of IPR. In the chapter 3, the statistics of registration and infringement of IPR are present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n Chinese IPR protection status. Finally, the chapter 4 tries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Korean enterprises by analyzing the IPR dispute cas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present WTO system, although Chinese government tries to strengthen the IPR protection system, the infringement cas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Korean enterprises need to prepare the proper protection measurements before they enter the Chinese market. As far as Chinese government is putting on more efforts to protect IPR, Korean enterprises are also required to adopt more aggressive counter measurements to protect their IPR.